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72

발의연월일: 2021. 3. 10.

발 의 자 : 김민기 · 이규민 · 최종윤

양정숙・양경숙・박성준

남인순 · 강득구 · 김진표

송옥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술·체육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 자신의 특기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제도 및 관련 복무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하고 있지 않아 제도를 알지 못하고 특기나 전공분야를 살려 복무하지 못하거나, 입영연기가 가능함에도 하지 못하는 등의 정보비대칭이 야기될 수 있 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대상자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 설).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병역변경 등의 통지) ① 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자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
- 1. 제5조제1항제1호가목·나목에 따른 현역,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
- 2.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
- 3.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
- 4.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자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
- 2. 제65조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
- 3. 「예비군법」 제5조에 따른 동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훈련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, 통지 방식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	개 정 안
<신 설>	제6조의2(병역변경 등의 통지) ① 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것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 1. 제5조제1항제1호가목・나목에 따른 현역,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2.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3.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및 입영등의연기4.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연기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것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
-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
   소집
- 2. 제65조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
- 3. 「예비군법」 제5조에 따른 동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 른 훈련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 지 내용, 통지 방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